

LPG備蓄과 코스트

이 글은 「日本 LPG 협회」가 通産省 자원에너지廳에 제출한 「LPG 비축에 대한 요망사항」의 부속자료 「LPG 비축 코스트에 대해서」를 옮긴 것이다. 이 비축코스트 시산은 日本 LPG 협회 비축위원회가 50일 비축목표를 달성할 때까지의 매년도 비축 코스트를 최근 데이터와 정부 조성제도에 의거 계산한 것이다. 내용면에서 단순한 비축 코스트의 계산뿐만 아니라, LPG 비축에 관한 제문제를 다룬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編輯者註〉

1. 計算을 위한 전제조건

〈表-1〉은 계산을 위한 전제조건중 비축량 및 필요 비축기지수에 관한 것이다. LPG 비축이 법제화되어 시행된 것은 81년 7월의 10일분부터이지만, 계산상 79년도말 5일분부터 매년도말 5일분씩 증가시켜 나가는 형태로 계산을 하였다.

(1) 연도별 輸入量

83년도까지는 실적치, 84-89년도는 본년도에 책정된 「LPG수급계획」을 기준치로 사용하였다. 90년도는 예년의 추세를 반영한 연장치이다. 비축량은 수입량의 함수이기 때문에 수입량에 따라 증감하게 된다. 84년에 책정된 수급계획의 최종연도인 88년도의 수입량은 1천307만3천톤이며, 금년도 계획량보다 20만7천톤이 많기 때문에 연도말 비축량의 계산치는 172만8천톤으로 이번 계획보다도 1만6천톤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 정도의 차이는 극소한 것이며 별 문제는 없지만, 3년전인 82년 5월에 「중합에너지 조사회」가 발표한 에너지 수급전망에 의하면 90년도의 LPG 수입량은 2천만톤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것으로 계산하면 90

년도말 비축량은 약 270만톤이 되어 이번 계획과 비교하면 비축 탱크만도 80만톤 이상, 업무상 필요한 상업용 탱크를 합치면 약 160만톤여분이 필요하여 10개소 이상의 기지를 새로이 건설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축기지 건설에 최저 5년 정도의 선행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비축법하에서 장기수급계획이 LPG수입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 비축대상 연간 수입량

비축량 산정의 대상이 되는 수입량은 1~12월(연간)의 수입량으로 비축증량을 위한 수입량이나 수출된 수량은 공제되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여 공제한 수량이다.

(3) 연도말 비축량, 비축증가량

비축대상 연간 수입량을 알면, 법으로 정해진 연도말 비축일수를 곱한 것이 연도말 비축량이며, 전년도말 비축량과 당해년도말 비축량과의 차이가 비축 증가량이다.

(4) 필요 비축기지수

각 연도말의 증가량을 저장하기 위해 그 연도내

〈表 - 1〉 전제조건 1. 비축량 및 필요기지수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 연도 수입량 (천t)	9,787	10,063	10,532	11,578	10,701	11,217	11,848	12,144	12,394	12,866	13,350	13,754
(2) 비축대상 연간 수입량 (천t)	9,512	9,672	9,952	11,591	10,750	11,125	11,392	11,863	12,136	12,534	13,143	13,592
(3) 연도말 비축일수 (일)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0	50
(4) 연도말 비축량 (천t)	130	263	408	634	734	911	1,092	1,300	1,496	1,712	1,800	1,862
(5) 비축 증가량 (천t)	-	133	145	226	100	177	181	208	196	216	88	62
(6) 필요 기지수	민간건설(16만t베이스)	1	1	1	1	1	1	2	-	1	-	-
	공단건설(20만t베이스)	-	-	-	-	-	-	-	1	-	-	1
	합계 기지수	1	2	3	4	5	6	7	9	10	11	12

에 그 수량에 맞는 탱크(기지)가 건설되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건설의 경우는 16만톤을 1개기지 단위로 하고, 공단 공동비축의 경우는 20만톤 기지를 단위로 하였다.

따라서, 79, 80, 81년도말의 비축증가량은 각각 16만톤에 달하지 못했으나, 1개 기지씩 건설하기로 하고 82년도의 증가량은 22만6천톤으로 16만톤보다 크지만 82년도말 비축량이 63만4천톤이기 때문에 16만톤 기지를 1개소 더 만들면 4개 기지 합계 64만톤이 되어, 82년도에도 1개기지 건설로 끝나게 된다.

이하, 똑같은 생각으로 기지수를 정했으나, 현재 건설중인 공동비축기지가 87년도 중에 완성될 것이며, 또 다른 1개소의 공단 공동비축기지가 90년도중에 완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단 공동비축기지 2개소는 어느 정도 실태에 맞추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민간기지수는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쓸모없는 모델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6월 12일 공시된 86-89년도 비축일수중, 새로이 설치해야 할 石油가스의 저장시설 용량은 다음과 같다.

86년도 : 23만1천톤, 87년도 21만8천톤

88년도 : 24만톤, 89년도 9만8천톤

이 숫자는 〈表-1〉의 비축증가량 86-89년도의 숫자를 0.9로 나눈 것으로 비축 증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탱크라는 관점에서 계산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대로 매년도 건설할 필요는 없다. 각 년도의 비축목표량을 저장할 수 있고 업무상의 운용에도 지장이 없는 탱크가 그 전년도말까지 있으면 되

〈表〉 수입기지 탱크능력 추이

(單位 : 千t)

	탱크능력	연간증가분
78년도말	1,656	
79년도말	1,660	4
80년도말	1,953	293
81년도말	2,214	261
82년도말	2,482	268
83년도말	2,969	487
84년도말	3,048	79
85년도말(추정)	3,086	38
86년도말(추정)	3,129	43

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79년도 이후에 건설된 수입기지 탱크능력의 추이는 〈表〉와 같다.

이 表의 숫자는 비축 탱크뿐만 아니라, 상업용 탱크(업무상 운용을 위한 탱크, 여름과 겨울의 계절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탱크)도 포함한 것이지만(봉인 비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축용과 상업용은 구별할 수 없다), 80-83년도에 한꺼번에 131만톤이나 되는 탱크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LPG 업계의 불황이라는 원인이 있어서 매년 4만톤의 탱크가 1-2기 증설되는데 그쳤다. 매년도의 비축증가량과 비교하면 84-86년도말 비축증가량 56만6천톤에 대해 완성예정인 탱크는 16만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비축이 달성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86년도말 313만톤의 탱

□ 資 料 □

크능력은 상업용 탱크능력을 생각해도 충분하다. 결국, 80-83년도에 너무 많이 비축탱크를 건설한 것이다. 민간 베이스의 건설에 이와 같은 기록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다음 <表-2>는 <表-1>이 외의 전제조건을 나타낸 것이며 이를 설명해 본다.

비축용

법률적으로는 전년 수입량으로 계산된 기준비축량을 상시 보유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 비축의무자(수입업자)가 보유해야만 하는 수량은 기준 비축량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축용 LPG에 대해서는 석유공단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해 주고 융자받은 자는 公團이 정한 수량(지시수량이라고 함)을 보유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지시수량에는 상반기말 지시수량과 하반기 지시

수량이 있어 하반기말 지시수량은 다음 연도의 기준 비축량과 원칙적으로 일치하지만, 상반기 지시수량은 그 비축의무자의 전년 하반기말 지시수량과 다음 연도의 상정기준 비축량(비축법에 의거 신고한 수량)의 중간치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에서는 매년도 5일분씩 증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단용자를 받은자는 상반기말에 2.5일분, 하반기말에 2.5일분씩 연 2회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하반기중에는 기준 비축량보다 지시수량쪽이 2.5일분 많게 된다. 公團으로부터의 구입자금 융자는 이 증가분을 대상으로 연 2회 해 준다. 당연한 일이지만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지 않은 의무자는 지시수량을 지킬 의무가 없고, 기준비축량만을 준수하면 된다. 그러나, <表-2>와 같이 연간 증가수량(이것은 결국 법에 의

<表-2> 전제조건 2. 소요자금·용자·금리등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상기말	하기말	상기말	하기말	상기말	하기말	상기말	하기말					
자 금(억원)	비축용LPG	전년도 6,100엔/t, 상기말, 하기말에 각각 2.5일분 취득(단, 79-80년도는 연도말에 5일분 취득)												
	시설	민간 공단	215	234	247	이후 260(16만t당)		(각 연도중에 5일분 완공)						
	토지	민간 공단	전년도 51.2				56.8		(8만엔/평×64천평)					(8만엔/평×71천평)
금 리(%)	비축용LPG	(비축 증강시의 장기 프라임레이트)												
	시설	8.8	8.8	8.5	8.4	8.9	8.4	8.4	7.9	7.9	7.4	이후 7.5		
	토지	7.6	7.1	8.2	9.5	8.5	8.9	8.4	7.9	(완공시(연도중)의 장기 프라임레이트)				
이 자 보 전 율(%)	비축용LPG	-	-	3.0	3.5	4.0	5.5	이후 5.75						
	시설	-	-	1.4	1.26	1.26	이후 1.12(이밖에 장기 프라임레이트와 특별금리와의 차이도 일종의 이자보전)							
	토지	-	-	(공단 비축 토지매에 대한 2/3 공단출자분도 일종의 이자보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용 자 비 율(%)	비축용LPG	당해기 CIF 가격의 90%												
	시설	민간	건설비의 70%, 한도액 4만톤 탱크당 34.65억원(개발은행 용자)											
		공단	건설비의 80%, 한도액 4만톤 탱크당 50억원(공단 용자)											
	토지	민간	4만톤당 0.35억엔(탱크부치분만)											
공단		토지매의 2/3 상당분을 공단 출자												

해 증강해야만 하는 수량이다)에 대해 그 LPG 가격의 90% 상당액이 프라임레이트로 용자되고 아울러 대폭적인 이자 보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 용자분을 포함해 모든 용자에 대해 5.75%의 이자 보전이 있다. 실행금리율은 $\langle 7.5\% - 5.75\% = 1.75\% \rangle$ 로 낮은 금리이다(본 시산 후 프라임레이트가 내리고 85년 상반기말 용자분은 7.2%가 되기 때문에 실행금리율은 1.45%가 된다). 아울러 내년도 이후 이자 보전율이 만약 증가하면(石油는 현행 6.1%로 되어 있다) 실행금리율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저리 용자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용자를 받을 것이다(실제로는 의무자 19사 중 3~4사가 용자를 받고 있지 않다). 용자비율까지 감안한 비축용 LPG에 대한 실질지불 금리율은 용자를 받은 것은 2.325%, 용자를 받지 않은 것은 7.5%로 차이가 크다. 따라서 사실상 비축량이란 법에 의거한 기준 비축량이 아니라 석유공단지시수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용자기준이 되는 LPG 가격은 의무자 개인의 LPG 가격 실적이 아니라, 대장성이 발표하는 매월 통관 통계 실적(엔화로 환산한 것)의 당해 기 6개월분(상반기말 증가분에 대한 용자라면 4-9월)의 단순 평균치를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 수입업자의 당해기 LPG 가격실적이 기준치를 웃돌면 실질적 용자비율은 90% 이하가 되며 기준치보다 싸게 수입할 수 있다면 90% 이상의 용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시산으로는 비축용 LPG의 단가를 6만 1천원/톤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LPG가격을 현행의 206\$/t, 운임, 보험료등을 38\$/t으로 잡고, 美貨 1달러당 円화를 250円으로 환산한 것이다.

시설관계

日本 LPG 協會 기술보안 위원회의 가산에 의거 82년도 이후 탱크 능력 16만톤의 표준기지 1개소의 건설비를 260억원으로 계산하였다. 단, 公団공동 비축기지는 20만톤 규모로 하고(공단의 내부규정이 최종 계획규모 20만톤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비는 305억으로 하였다. 본 시산에서는 <表-1>과 같은 탱포로 16만톤, 20만톤 규모의 기지를 각 년도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 소요

자금의 용자는 민간비축에 대해서 개발은행이, 공동비축에 대해서는 공단용자로 하고 기준금리는 완공시의 장기 프라임레이트로 했다. 용자비율에 대해서는 민간비축의 경우 건설비의 70%, 단 한도액이 탱크 4만톤당 34억 6천 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60억원의 70%인 182억엔, 16만톤 기지이기 때문에 34억 6천 500만원의 4배인 138억 6천만 원이 되어 후자가 적용되며, 실질적 용자비율은 53.3%로 저해된다. 공동비축의 경우는 공단용자가 건설비의 80%, 단 한도액이 탱크 4만톤당 50억 원이기 때문에 305억원의 80%인 244억 원, 20만톤 기지이므로 50억원의 5배인 250억 원이 되며, 한도액 이내이기 때문에 전자가 적용되어 용자비율은 80% 선으로 민간비축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이자 보전율에 대해서는 현재 1.12% 보다 낮은 것이 없다. 이것은 시설을 탱크 본체와 부대설비로 나누어 전자가 40%, 후자가 60%를 차지하도록 하고 전자는 100% 평가, 후자는 50% 평가로 하여 각각 1.6%의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평균하면 시설 전체에 대해 1.12%의 이자보전이 된다. 이밖에 개발은행 용자는 특별금리(현행 7.1%)를 적용하기 때문에 프라임 레이트와의 차이도 일종의 이자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이 시산으로는 7.5%-7.1%=0.4%). 그러나 최근과 같이 장기 프라임레이트가 내리고(현행 7.2%), 특별금리가 일정기간 거치되면 유리함은 거의 없다(82년도 당시는 장기 프라임레이트가 8.9%, 개발은행 특별이자는 7.3%이었기 때문에 차이는 1.6%이었다). 또한, 81년도 당시는 이자 보전폭이 현재의 1.6%에 대해 2%이었던 것이 82년도에 1.8%, 84년도에 1.6%로 조성 강화는 커녕 후퇴하고 있다.

토지관계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건설의 경우에 한해서 보는 한 조성조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탱크 부지 상당분 정도의 용자는 토지 취득금의 2.7%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公団 공동비축의 경우는 토지 대의 3분의 2 상당액의 출자금의 형태로 공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기 프라임레이트를 7.5%로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대 전체에 대해 5%의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것과 같은 잇점이 있다. 공단 비축

의 유리성은 여기에도 있다.

2. 備蓄코스트 시산 총괄표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전제조건에 의거해 시산된 금리, 감가상각비, 제세, 보험료등 외에 기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인건비, 수선비, 동력비, 잡비등)에 대해서 각각 상세히 계산한 것이 <表-3>이다. 이하 이에 대해 해설해 본다.

<表-3>의 형식은 비축 LPG, 시설, 토지등 각각에 관련된 금리와 경비에 대해서 전체액을 산출하고, 그것을 정부 조성분과 나머지(업계 부담분)로 나누어 조성비율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각 년도

의 비용을 나타내고, 하단에 그 비용액이 현실의 비축량 1톤당 몇천円이 될 것인가. 또한 그 비용액을 그 연도의 수입량에서 비축증가량을 뺀 수량, 즉 그 연도의 출하 가능량으로 나누면 1톤당 몇円이 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 84년도에 예를 들어 설명하면 84년도말에 91만1천톤의 비축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84년도의 총비용은 341억円이며 이중 정부 조성은 7.6%에 지나지 않고, 업계 부담액은 315억2천만円으로 92.4%가 되고 있다. 각 비용을 정부조성 비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축 LPG에 대해서는 34%의 조성이 있으나, 시설에 대해서는 8%, 토지에 대해서는 제로,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2%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총비용 341억

<表-3> 79-88년도 설비코스트 시산 총괄표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비축 증가량 누계(천t)			130	263	408	634	734	911	1,092	1,300	1,496	1,712										
증가량 공제후의 수입량(천t)			9,657	9,930	10,387	11,352	10,601	11,040	11,667	11,936	12,198	12,650										
			억円	%	억円	%	억円	%	억円	%	억円	%										
비 축 LPG	금 리	정부조성	-	-	0	-	2.4	9	6.2	18	14.0	34	19.0	40	24.3	44	30.4	47	36.5	50		
		업계부담	-	-	7.0	100	15.9	100	23.0	91	29.1	82	26.7	66	29.1	60	31.3	56	34.1	53	37.2	50
		소 계	-	-	7.0	100	15.9	100	25.4	100	35.3	100	40.7	100	48.1	100	55.6	100	64.5	100	73.7	100
	시 설	정부조성	-	-	0.4	1	2.3	4	5.4	7	8.3	8	10.1	9	12.4	9	15.3	10	16.8	10		
		업계부담	8.6	100	27.2	100	45.8	99	62.4	96	77.0	93	89.5	92	100.9	91	119.8	91	137.9	90	146.6	90
		소 계	8.6	100	27.2	100	46.2	100	64.7	100	82.4	100	97.8	100	111.0	100	132.2	100	153.2	100	163.4	100
	토 지	정부조성	-	-	-	-	-	-	-	-	-	-	-	-	0	-	1.5	4	2.9	7		
		업계부담	2.0	100	5.7	100	9.6	100	14.1	100	18.8	100	23.2	100	27.7	100	33.8	100	38.5	96	41.2	93
		소 계	2.0	100	5.7	100	9.6	100	14.1	100	18.8	100	23.2	100	27.7	100	33.8	100	40.0	100	44.1	100
경 비	정부조성	-	-	1.4	1	3.4	3	3.6	2	3.5	2	5.7	3	7.7	3	5.5	2	4.0	1			
	업계부담	38.8	100	67.1	100	93.9	99	120.1	97	146.5	98	175.8	98	210.6	97	245.6	97	278.0	98	295.3	99	
	소 계	38.8	100	67.1	100	95.3	100	123.5	100	150.1	100	179.3	100	216.3	100	253.3	100	283.5	100	299.3	100	
합 계	정부조성	-	-	1.8	1.1	8.1	3.6	15.2	5.3	25.8	7.6	34.8	8.6	44.4	9.3	52.7	9.7	60.2	10.4			
	업계부담	49.4	100	107.0	100	165.2	98.9	219.6	96.4	271.4	94.7	315.2	92.4	368.3	91.4	430.5	90.7	488.5	90.3	520.3	89.6	
	합 계	49.4	100	107.0	100	167.0	100	227.7	100	286.4	100	341.0	100	403.1	100	474.9	100	541.2	100	580.5	100	
비 축 량 당 (천円/t)	정부조성	-	-	0.4	1.3	2.1	2.8	3.2	3.4	3.5	3.5											
	업계부담	38.0	40.7	40.5	34.6	37.0	34.6	33.7	33.1	32.7	30.4											
	합 계	38.0	40.7	40.9	35.9	39.1	37.4	36.9	36.5	36.2	33.9											
비 축 증가량 공 제 후의 수입 량 당(円/t)	정부조성	-	-	17	71	143	234	298	372	432	476											
	업계부담	512	1,078	1,590	1,934	2,560	2,855	3,157	3,607	4,005	4,113											
	합 계	512	1,078	1,607	2,005	2,703	3,089	3,455	3,979	4,437	4,589											

을 91만 1천톤의 비축량으로 나누면 1톤 비축하는데 연간 3만 7천 400원의 비용이 든다. 이중 업계 부담분은 3만 4천 600원이 들고 있다. 84년도의 총수입량 1천 121만 7천톤에서 연도내 비축증가량 17만 7천톤을 뺀 84년도 수입 LPG 출하가능량 1천 104만톤으로 나누면 모든 출하량에 대해 1톤당 3천 089원의 비축코스트가 들며 234원 밖에 사용하지 않는 정부조성을 빼면 2천 855원은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축 코스트이다.

다음에 50일 비축이 달성되는 88년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행 조성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171만 2천톤을 비축하기 위한 총 비용은 연간 580억 5천만 원, 그중 89.6%인 520억 3천만 원은 업계 부담이며, 정부 조성은 10.4%에 지나지 않는다. 각 비용에 대해서 정부 조성 비율을 살펴보면, 비축 LPG는 50%, 시설은 10%, 토지는 7%로 낮은 편이다. 1톤 비축당 업계 부담액은 3만 400원, 수입가스 출하량 1톤당의 비축 코스트 업계 부담액은 4천 113원이 된다. 출하량 1톤당의 비축 코스트의 매년도 증가분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은 매년도의 기지전설 템포가 비축 증가량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데에 가장 큰 이유가 있

으며, 따라서 79년도(5일분)부터 87년도(45일분)까지를 평균하여 매년도 5일분씩 증가시킬 때마다 출하량 1톤당 비축코스트가 491원, 그중 업계 부담분으로서 매년도 437원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88년도를 제외시킨 것은 87년도에 완공되는 公團 공동기지의 코스트가 민간비축과 비교하여 낮기 때문에 평균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3. 所要資金

〈表- 1, 2〉와 같은 전제하에 50일분 비축을 추진해 갈 경우, 필요한 자금량을 나타낸 것이 〈表- 4〉이다. 총 소요자금량은 비축LPG 1천 44억 원, 시설 2천 821억 원, 토지 569억 원, 합계 4천 434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이다. 이에 대한 정부유자액은 비축LPG 686억 원, 시설 1천 214억 원, 토지 46억 원, 합계 1천 947억 원이며, 업계가 자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비축LPG 358억 원, 시설 1천 607억 원, 토지 523억 원, 합계 2천 487억 원에 달한다. 정부 유자비율은 비축 LPG 65.7%, 시설 43%, 토지 8.1%, 합계 43.9%가 된다. 단, 실제비축 LP

〈表- 4〉 소 요 자 금

(單位: 100만 원)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합 계
소요자금	비축 LPG	7,930	8,113	8,845	13,786	6,100	10,797	11,042	12,688	11,956	13,176	104,433
	시설	21,500	23,400	24,700	26,000	26,000	26,000	26,000	52,000	30,500	26,000	282,100
	토지	5,120	5,120	5,120	5,120	5,120	5,120	5,120	10,240	5,680	5,120	56,880
	합	34,550	36,633	38,665	44,906	37,220	41,917	42,162	74,928	48,136	44,296	443,413
유자액	비축 LPG			3,584	10,146	8,815	△ 167 6,124	△ 518 9,250	△ 788 10,546	△ 215 10,953	△ 261 11,170	68,639
	시설			3,465	10,395	13,860	13,860	13,860	27,720	24,400	13,860	121,420
	토지					140	140	140	280	3,787	140	4,627
	합			7,049	20,541	22,815	19,957	22,732	37,758	38,925	24,909	194,686
업계부담액	비축 LPG	7,930	8,113	5,261	3,640	△ 2,715	4,840	2,310	2,930	1,218	2,267	35,794
	시설	21,500	23,400	21,235	15,605	12,140	12,140	12,140	24,280	6,100	12,140	160,680
	토지	5,120	5,120	5,120	5,120	4,980	4,980	4,980	9,960	1,893	4,980	52,253
	합	34,550	36,633	31,616	24,365	14,405	21,960	19,430	37,170	9,211	19,387	248,727

□ 資 料 □

G 구입 자금의 용자는 실행되는 것이 당해 기말부터 3개월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상반기 말분이 12월, 하반기 말분이 다음연도 6월), 본 시산에 참고되지 않은 88년도 하반기말 용자액(89년도 용자 실행) 59억원을 추가하여 수정하면 비축LPG 용자 비율은 71.3%, 합계 45.3%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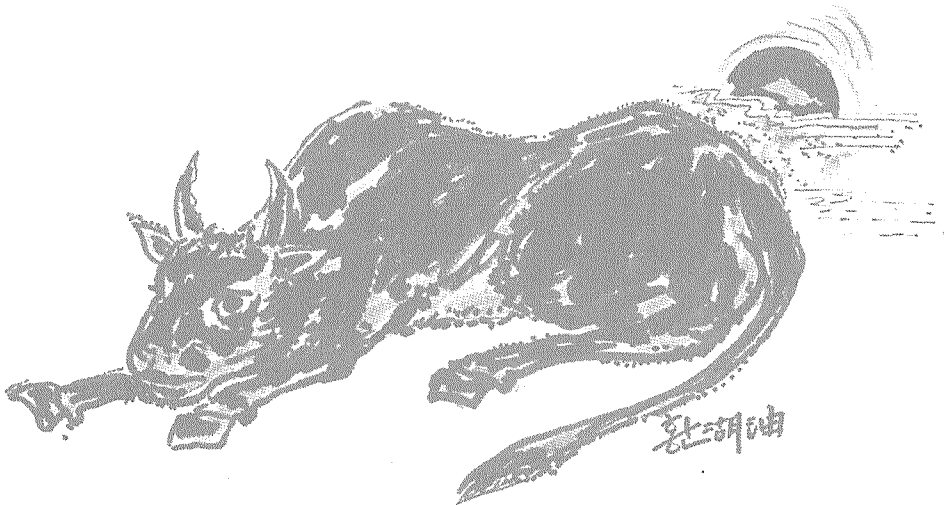
한편, <表-4> 비축LPG 용자액 84-88년도 난의 상단에 △표시 금액이 있으나, 이것은 현행비축 용자제도상의 한가지 흥미있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설명해 두고자 한다. 「석유공단비축 석유가스 구입 자금 용자운용요령」에 의하면 용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재용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 재용자액이 규정상 동액재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 영구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비축이라고 해도 오래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항상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며, LPG 가격이 점점 상승하면 동액 재용자로는 실질 용자비율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새로운 단가로 재평가 하고

추가용자를 해주기 바란다』는 차입자측의 요망이 인정되고 신·구가격의 평균치로 평가 전환하는 현행 규정으로 바뀐 것이 81년도 부터이다. 따라서, 현행 재평가 규정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LPG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된 구제조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정세가 변해서 최근에는 FOB 가격의 인상에 의해 CIF 가격이 떨어지고, 재용자시의 평가전환에 의해 재용자액이 감소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83년 상반기말 증가분의 용자 단가는 7만6천767원/톤이었으나, 이 용자분의 재용자시(86년 12월)의 CIF 가격은 본시산에서 6만2500원/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용자 단가는 6만8천509원/톤이 된다. 원 용자액의 89.2% 밖에 재용자되지 않는다. 이 감소액을 각 년도 △표시로 나타낸 것이다. 84-88년도의 감소액 합계는 약 20억원으로 계산되며, 이자보전이 5.75%로 저리 용자이기 때문에 이자지불 증가분은 매년 1억원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구제조치가 때로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불평도 있다. *

<日本 순간석유정책 10/15>

□ 漫 評 □

乙丑年...牛公의 辨



가누나, 또 한해가 가누나!
그런데 내 시세(牛價)는 왜 요모양이고